

# 산업보건 주요뉴스

## 화학물질 소음 분진 관련사업장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대상,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포함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안전보건 환경이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이다.

「작업환경 측정」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며,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직업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산업보건활동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특수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검진에 따른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장 및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측정과 검진을 실시한 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이 심사 후에 실시기관에 해당 비용을 지불한다.

신청 접수는,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의 경우 상반기에는 2월말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는 6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를 받는다.

한편, 지난해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모두 17,117개 사업장이었으며,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75,889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 50인 미만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

전국 52만 6천개 사업장 기술지원. 7천 2백여 사업장 재정지원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프레스 등의 위험 기계류를 사용하는 등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3D 작업을 주로 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지원이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재해가 다발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52만 6천개소를 선정, 직접 방문을 통한 안전보건기술지원에 나선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취약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도 실시된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재해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한 해동안 전체 산업재해자 92,256명 중 81.5%에 해당되는 75,151명의 재해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기술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민간 재해예방 기관 200곳을 선정하고, 민간 재해예방 기관의 전문 수행요원 1,200여 명을 활용해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에 나서게 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이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건설업은 공사규모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대상이다. 기술지원 내용은 전문수행요원이 사업장의 재해요인을 발굴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하며, 재해예방자료 제공,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진행활동 지원 등 대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산재예방 요율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재해예방 활동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거나, 사업주가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산재보험료를 10%에서 2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총 예산 724억 원을 들여 취약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2천만원내에서 50%에서 70%까지 지원한다. 대상사업장은 5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 고용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이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약 7,20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